

(통권 21-2호)

예산·재정정책 정보

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,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·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·정리한 자료입니다.

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,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Tel : 635-5205)

2021. 3. 25



충청남도의회사무처
(예산정책담당관)

	분 야 별 목 차	
분 야	제 목	페이지
I. 경제	1.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	1
	2. 충남경제-21년 1월 충남경기종합지수(21.3)	2
II. 재정	3.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(3.25) (4차 재난지원금)	3
	4.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지출 비교	5
	5. 재난지원금 과 정부 간 관계	7
III. 정책	6.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평성	8
	7.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	9
	8.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	10
IV. 법률 제·개정	9.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승재의원 등 16인) -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명시	11

1.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

- 최근 국내 경제는 코로나 재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가 부진하나, 수출과 설비투자는 빠르게 개선
 - 소매판매가 소폭(12월 전월대비 0.2%) 증가하고 소비심리도 반등하였으나,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서비스업 생산(12월 - 1.1%)이 부진
 - 수출은 글로벌 수요 회복, 반도체 등 IT 업황 개선, 주력품목의 단가 상승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(12월 전년 동월대비 12.6% → 1월 11.4%)
- 최근 경기동행지수가 소비·고용지표의 부진으로 7개월 만에 상승흐름을 멈췄으나, 경기선행지수는 투자·심리·금융지표를 중심으로 7개월 연속 개선(성장 모멘텀은 유효)
- IMF(1.26일)의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(2021년 5.2%→ 5.5%), 4차 재난지원금(20조원 내외 관측) 추진을 반영하여 2021년 국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.0%에서 3.3%로 상향 조정
 - 국내 GDP 성장률 개선(2020년 1.0% → 2021년 3.3%)은 주로 수출과 투자가 견인할 것으로 예상
- 2021년 경제성장률이 추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(예: 효과적인 백신 접종,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)이 하향 조정될 위험(예: 코로나 재확산과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경제활동 제한 강화)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

출처 : 우리금융경영연구소(「2월 경제브리프」, 2021. 2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2. 충남경제-2021년 1월 충남경기종합지수

- 1월 전국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, 수입액 등 증가, 비농림어업취업자수, 건설기성액 등 감소하여 전월대비 0.1% 감소
 -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.5로 전월대비 0.2p 하락
- 1월 전국 선행종합지수는 수출입물가비율, 기계류내수출하지수가 감소하였으나, 코스피, 경제심리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.6% 증가
 -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.7로 전월대비 0.3p 상승
- 1월 충남의 동행종합지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모습. 다만, 되살아나기 시작한 소비의 반등, 산업생산, 수출이 소폭 증가(전월대비 0.1% 증가한 108.8)
 -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순환변동치는 9.1로 전월대비 0.1p 상승
 -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(1.1%), 판매전력량(0.9%), 수출액(0.8%), 산업생산지수(0.3%) 등은 증가, 비농가취업자수(-0.8%), 수입액(-0.3%) 등은 감소
- 1월 충남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인 증가세 지속, 1분기 반도체 가격 상승, 투자와 밀접한 자본재 수입 증가 등 경기회복 기대(전월대비 1.1% 증가한 105.0)
 - 경기 순환변동치는 105.4로 전월대비 1.4p상승
 - 주가지수(10.4%), 자본재수입액(2.9%), 신규구인인원(2.3%), 반도체 수출입물가비율(0.3%) 증가, 비제조업자금사정실적(-0.7%), 제조업재고순환지표(-1.4%p) 감소, 제조업중간재출하지수(0.0%보합)

출처 : 충남연구원(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, 2021. 3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3.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(3.25) (4차 재난지원금)

- (재정 총량) 총지출은 정부안 수준(573조원)을 유지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증액 소요 반영
 - 이에 따라 확정된 추경의 재정수지(GDP대비 △4.5%)와 국가채무(GDP대비 48.2%)는 정부안과 변동 없음

- (증액 사업)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 중점, 1.4조원 증액
 - 농식품 소비감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·인력·자금 등 종합 지원(+0.2조원)
 - 매출감소가 심각한 여행·공연·전시업 등 경영위기업종 유형을 세분화(5→7종)하여 버팀목 플러스+ 자금 상향(+50~100만원)
 - 전세버스기사(3.5만명)에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, 대면근로 필수노동자(103만명)에 대해 4개월분 80매의 방역마스크 지원
 -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에 대한 헌신과 보상차원에서 감염관리수가(4만원/日) 한시 지원(2만명, +480억원)
 -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 1조원 금융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브릿지보증 0.5조원

- 매출 감소 소상공인·소기업에 지급하는 '버팀목 플러스' 자금
 - 수혜대상 380만명의 70%인 270만명(매출 감소 확인 '신속지급 대상자')에게 29일 지원금 지급과 안내문자 발송 시작
 - 4월 중순 '2차 신속지급대상자'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신청 개시

○ (기존 수급) 특고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

- 수혜 대상 80만명의 88%에 달하는 70만명(기수급자)에게 오는 30일부터 지급 시작
- 구체적으로 △3월 26일 사업공고 △3월 26~27일 안내문자 발송 △3월 26일~4월 2일 신청 접수 △3월 30일~4월 5일 지급

○ (신규 수급) 긴급고용안정지원금

- 신규수급자 10만명에 대해서는 4월 12~21일 신청을 접수해 22일 소득심사를 시작
- 5월 말부터 실제 지급을 시작한다는 목표

출처 : ①기획재정부 보도자료(2021.3.25.)

② 머니투데이

https://news.mt.co.kr/newsflash/frame_article.html?no=2021032508563982385&sec=all

4.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지출 비교

- IMF에 따르면, G20 경제선진국 10개 국가¹⁾ 중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DP 대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(44.0%)으로, 이탈리아(42.3%), 독일(38.9%), 영국(32.4%), 프랑스(23.5%) 순서
 - 한국의 지출 규모는 GDP의 13.6%로 10개국 중 10위로, GDP 대비 지출 규모가 가장 낮음(한국 2,220억달러)
 - G20 경제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출액은 미국이 40,130억달러, 일본 22,100억달러, 독일 14,720억달러, 영국 8,770억달러, 이탈리아 7,900억달러 순서
- G20 경제선진국,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에 GDP의 평균 11.3% 사용(확장재정)
 -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재정조치의 일환으로 GDP 대비 추가 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의 비중은 한 국가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재정적 지원조치를 취했는지를 알 수 있음
 - 한국은 GDP의 3.4%를 사용했으나, 유동성 지원에는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 조치의 약 3배인 GDP의 10.2%를 씀
(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지출 방식에서 유동성 지원에 치중)
-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유동성 지원 방식의 재정조치 비중이 커지는 경향
 - 일본, 한국 등은 유동성 지원의 비중이 크고, 영국, 미국 등은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 조치의 비중이 높음

¹⁾ 호주, 캐나다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일본, 한국, 스페인, 영국, 미국

- 한국은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지출 규모가 큰 편이 아님에도,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 조치보다 상환을 염두에 둔 대출·보증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인 유동성 지원 조치의 규모가 크다는 것임
 - GDP 대비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 조치의 지출액 규모만 비교했을 때, 한국의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 조치의 지출액은 G20 경제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
-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GDP의 13.8%를 쓰고 있지만, 이 중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 조치의 비중이 낮음. 객관적인 지출 규모만 비교하더라도, 한국의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 조치는 GDP 대비 3.5%로 G20 경제선진국 10개 국가중 9위를 차지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함
-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, 시민들에게 정부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유인하는 방책임
- 코로나19가 연말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, 가계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가운데, 정부는 한국의 경제 규모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해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 규모 총액과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 조치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

출처 : 나라살림연구소(나라살림브리핑, 2021. 2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5. 재난지원금과 정부 간 관계

- 코로나19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
 - 지역마다 피해의 정도와 사정이 달라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, 독자적인 정책 시행 필요
-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이 필요
 - ①국가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급하는 통합형, ②자체사업을 별도로 시행하는 중복지원형, ③국가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에 지급한 자체 지원금을 지방비 매칭비로 간주하여 국가지원금사업 대응 매칭비를 기존 자체사업비에서 제외한 후 지급하는 연계지원형
 - 수급자격 여부 판별, 상품권 지급 등을 지원할 인력과 인건비 확보, 효율적인 접수와 지급, 기타 이의신청 및 현황통계 관리를 위한 정부 간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 필요
- 결론 및 시사점
 -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자체 지원금을 지급 경향
 - 자체 지원금과 국가 지원금의 긴급 매칭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는 세출구조조정과 순세계잉여금,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
 - 매칭재원 확보 과정에서 세입 분권이 열악한 지역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감당하는 재정적 압박 수준이 다를 것임
 - 따라서 지방 자율성의 구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자체 재정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

출처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(지방재정, 2020. 12.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6.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평성

-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
-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령계층이 중심이고 비용부담자는 주로 동년도의 근로계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부담자와 일치하지 않음
 - 장기적으로 노인장기보험료율은 4%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세대간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 판단
- 현 제도 하에서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보험료율이 2065년 경에는 2020년 현재 소득대비 0.68%에서 6.4%로 증가 전망
 - 분석 결과,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을 단년도 회계기준 부과방식에서 가능한 적립금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개편 필요
-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법정 비율인 보험료수입의 20%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도 보험제도의 엄격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
 -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지출도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의 역할의 조정 필요

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(보건사회연구, 2020. 12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7.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

○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

- 가축분뇨량은 증가하나 퇴·액비 사용면적은 농촌의 도시화로 토지면적 감소 → 퇴·액비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
- 한국토양은 질소 및 인의 초과율이 평균 134.5%, OECD국가 중 질소는 한국 1위, 인은 2위(1위 일본)
- 가축 증가로 분뇨발생량 증가(’19년도 전년대비 24.2% 증가)
- 가축분뇨 자원화비율 증가(’08년 84.3% → ’19년 91.4%)
- 개별분뇨처리시설 80.3%, 공동자원화시설 등 위탁처리 중
※ 정화 방류처리 : 2008년 9.8%에서 2019년 7.4%로 감소함

○ 환경오염방지 방안으로 첫째, 퇴·액비부속도²⁾ 기준강화, 둘째, 배출시설 신고·허가 농가는 퇴비부속도 의무검사(결과 3년 보관)

○ 향후 가축분뇨 자원 활성화 대응 방안

- 퇴·액비 생산 이외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, 고체연료화로 정화방류량 감소 필요
- 공동자원화 시설처리 등 전문처리시설업체 및 개별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지원 필요
- 가축분 퇴비의 비료성분 표시제 도입 및 퇴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등 검토 필요

출처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(농정포커스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2) 퇴·액비 부속도란 퇴액비 액비화를 통해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태

8.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

- 농촌태양광 사업³⁾은 농가소득 증대 목적 추진(2030년 목표연도)
 - 「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」 등 상위계획에서 설정한 농촌태양광 보급 목표 대비 농촌태양광 설비용량은 초과 보급
 - 농촌태양광의 주 수입원인 REC(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) 가격의 하락, 농촌태양광 사업 목적인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제도 보완
- 정부는 외지인·사업자 주도의 농촌태양광 사업에서 탈피하여 농업인 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 미흡
 - 농업인 참여모델 확산,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농업인 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 활성화 필요
- 사업목적인 농가소득 증진과 관련된 성과관리체계가 미흡
 - 재정사업 수행시 농가소득 점검 성과지표 설정 병행
 - 농촌태양광 통계 구축 시 농가소득 실태 점검 강화 필요
 - 수입원인 SMP(전력판매수입) 및 REC 가격 하락, 보완하기 위한 고정가격계약제 적용받는 농촌태양광의 비중이 낮아 개선 필요
- 농촌태양광 설치를 통한 농지전용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
 - 적정 농지 유지·확보 등을 종합 고려, 사업추진 필요
 - '18년 제도개선 이후 산지태양광 설치 건수 감소, 기존 설치된 산지태양광 시설 관련 피해 증가 감안 →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은 산지태양광 피해 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

출처 : 국회예산정책처(2021. 3.16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3)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, 「농촌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방안(2016)」

9.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승재의원 등 16인)

-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·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.
 - 그런데 기존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일부 규정이 현행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‘소상공인의 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’ 조항도 이관되었으나,
 - 기존 법 조항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누락
 -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규모의 일부에 그치고 있고, 그나마 지원도 정부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
- 이에 재해·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, 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, 피해 지원 등이 보다 체계적·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).

출처 :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1.2.23.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